

네트워크 회의
-차별금지 회의

“온라인 혐오차별 실태와 대응방안“

이승현
[한국, 연세대학교 강사]

혐오와 차별의 발견

근대 이후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각 개인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사회와 국가의 이념적 목표로 수용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으나, 특정 집단 구성원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해당 집단에 대한 왜곡된 이해와 그 구성원의 존재에 대한 차등적인 가치 부여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어떤 특정 집단을 부정적으로 전형화(stereotype)하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 집단에 속한 개인들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 인간이라는 사실이 쉽게 잊혀진다. 이러한 편견은 일상생활에서 익숙하게 접하는 이미지로 습득되고 동시대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영역으로 공유되면서 주류문화로 자리잡으며, 쉽게 다시 후세대에 전승될 수 있다. 나아가 그러한 편견이 무의식적으로 반영된 결정은 다수의 결정으로 법과 정책에 반영되어 제도로 정착되며, 사회의 지배적인 관념으로 공고화된다. 사회구조적으로 권력적 약자에 해당하는 집단에 대한 편견은 사회적·제도적 차별로 이어지지만, 사회통념이나 평균적인 일반인의 인식이라는 이름으로 합리적 차별로 여겨지거나 오히려 정당한 인식이라고 여겨지는 경우도 발생하며, 해당 집단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배제하고 공격하는 혐오표현(hate speech)이나 혐오범죄(hate crime)로 발전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엇이 문제되는 편견과 차별이며 그에 기반하여 발생하고 있는 혐오표현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곧 차별과 혐오를 발견하고 대응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혐오와 차별의 확산

편견과 차별의식은 사회에 잠복되어 보이지 않게 존재하지만,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외부로 드러나게 된다. 예를 들어 그 집단이 사회 내로 유입되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존재를 드러내는 경우, 혹은 국가·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때, 사회문제의 원인을 이들 집단에게 돌리며 공격하는 현상은 혐오표현과 혐오범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이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질 때는 표현행위의 형태로 드러나며, 이러한 점에서 온라인상 혐오범죄는 혐오표현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온라인 공간은 익명성을 가진 표현행위가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광범위하게 확산·전파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특징은 한편으로는 혐오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이고 과격한 표현행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에 따르면 성적 소수자의 94.6%, 기타 여성 83.7%, 장애인 79.5%, 이주민 42.1%(이주민의 경우 온라인 이용 시간 및 이용 사이트 범위, 한국어 혐오표현에 대한 이해도 등으로 인해 낮게 나온 것으로 추정)가 온라인 혐오표현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혐오표현 경험자들이 혐오표현을 경험한 곳은 채팅앱과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에서 본래의 게시물보다 댓글에서 혐오표현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문, 방송, 포털 등의 온라인 뉴스 기사나 영상의 댓글에서 혐오표현을 본 경우가 78.5%로 가장 많았으

며, 그 다음으로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 사이트의 댓글 73.7%, 페이스북의 댓글 73.3% 순이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온라인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거의 없거나 그 적용에 소극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을 차별행위로 권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통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실에서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정보 및 유해정보의 심의기준을 구체화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8조 3호 바목은 온라인상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지역, 직업 등에 대해 차별·비하·증오하는 내용’ (차별·비하 표현)을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상 특정 속성을 이유로 한 모든 적대적 표현에 대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혹은 모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특정 집단 전체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혐오표현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

온라인 혐오표현의 확산과 이에 대한 법적 규제의 미비에 대하여 어떠한 대응이 요청될 것인가. 혐오표현의 특성상 혐오표현을 하는 사람은 이를 정당하거나 필요한 표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혐오표현의 억제를 위해 형사처벌 등 법적 규제가 효과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익명성과 개방성은 혐오표현의 확산의 장으로 기능할 수도 있는 동시에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그리하여,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으로 현행법 혹은 새로운 입법을 통한 표현내용규제가 더 적절한가 혹은 자율규제나 시민사회의 대응이 더 적절한가가 논해지고 있다.

온라인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응

혐오표현은 그 대상이 되는 집단에 대한 인간 존엄성을 부정하고 기존의 차별을 확산·공고화시킬 뿐만 아니라 공론장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가치와 그 작동에 해악적인 효과를 미친다. 따라서 혐오표현의 억제를 위한 대응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공동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온라인 혐오표현을 중심으로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염두해야 하는 지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의 대응에는 해당 표현에 대한 금지나 처벌과 같은 직접적인 표현내용규제와 자율규제·교육홍보 등 비사법적 규제가 있다. 국제인권규약 및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 입법례에서 혐오표현의 금지나 처벌에 대한 입법은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우리 헌법상 이와 같은 법적 규제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혐오표현의 특성 및 국가에 의한 표현의 규제에 대한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그 효과성에 회의가 제기되기도 한다. 즉, 혐오표현은 사회에서 오랫동안 습득

된 편견과 차별의식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혐오표현을 하는 사람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크다는 점,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강도 높게 이어졌다는 점에서 혐오표현과 그 규제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규제 제도에 대한 수용도가 낮을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양자의 대응이 모두 가능하나 전자의 방식에 대한 선결조건으로 후자의 방식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이해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대응이 마련되어야 한다. 온라인 공간은 오프라인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자유로운 의견 형성 공간으로서 더 많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으로 이해되어 왔다. 따라서 전통적인 미디어인 방송과 신문에 비해 국가의 규제가 소극적일 것이 요청되어 왔으며, 범세계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국가 규제의 어려움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융합 환경과 나아가 소셜미디어와 1인 방송 등 인터넷 플랫폼의 발달로 온라인 규제 방식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현재진행 중이다. 따라서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는 이와 같은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야 하며, 동시에 온라인의 특성을 활용한 대응방안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국가 단위가 아닌 국제 단위에서, 온라인 공간의 주체인 이용자,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국가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거버넌스가 중요시된다.

셋째, 공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왜곡을 혐오표현의 해악성으로 드는 이유는 인간의 동등한 가치를 부정하고 공동체로부터 배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 주장이나 정책 제안을 담은 표현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차별받아온 특정 집단에 대해 국가나 시민에게 그 차별행위를 유지하거나 확대할 것을 설득하는 것이 정당하고 올바른 주장이라고 이해하며 편향되거나 허위의 사실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혐오표현의 대표적인 양상 중 하나이다. 이러한 사실 주장 혹은 의견에 의한 차별과 폭력의 선동이 확산되면 사회의 일반적 인식으로 더욱 고착되고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국회와 정부 수반은 이를 반영하는 정책과 제도를 유지하거나 확대시키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넷째,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사회적·제도적 차별철폐 및 이에 대한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먼저 국가는 기존의 차별적 제도와 정책을 철폐하고, 차별철폐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할당제 도입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또한, 혐오표현의 근저에는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의식을 완화하고 세대의 되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인권교육과 홍보가 혐오표현을 포함한 모든 차별의 철폐의 목표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이 중 특히 청소년과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식은 어린 시절부터 일상적으로 습득되며 한번 고정되면 쉽게 변화되지 않는 인식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형성되어 나가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평등 교육은 혐오표현 억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응방안이다. 또한,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집단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혐오차별’에 대항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언론과 교육의 주체들을 포함한 전체 시민사회에서는 우리 사회의 차별에 함께 대항하고, 해당 집단 구성원들을 지지하고 연대하며, 혐오표현이 담고 있는 차별의식과 선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대항언론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혐오와 차별을 불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